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김 성 천**

〈국문초록〉

이 글은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품질보증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품질보증이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약속 또는 법적 책임으로,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을 하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품질보증의 책임은 소비자,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한다. 이 중 정부는 관련 법제를 통해 품질보증을 촉진해야 한다. 이 글은 품질보증과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여 수범자인 기업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품질보증법제는 소비자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종자산업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수인하고 용인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이 글은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규범론적 분석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품질보증과 관련한 규제가 현실점에서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법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규정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품질보증법제의 계속성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위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견해이다.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법학박사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품질보증법제의 체계적합성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비교법적 분석으로 미국, EU,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품질보증법제의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방안, 소비자제품질법의 제정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향후 입법자가 향후 품질보증에 관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입법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품질보증, 품질보증법제,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제품질보증법, 소비자권리,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
- I. 서 론
 - II. 품질보증법제의 현황과 입법체계
 - 1. 품질보증의 의의
 - 2. 품질보증법제의 현황
 - 3. 품질보증법제의 입법체계
 - III. 품질보증법제의 사후적 입법평가
 - 1. 규범론적 분석
 - 2. 비교법적 분석
 - IV. 대안과 권고
 - 1. 대안제시
 - 2. 대안비교와 권고
-

I. 서 론

제조기술의 진전과 판매방법의 다양화에 힘입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비재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로 시장에 출하되어 소비자의 구매욕구

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의 출현은 소비생활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주는데 반해, 사업자 특히 제조자의 성급한 상품개발로 인하여, 품질, 기능, 내구성 더 나아가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피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는 가능한 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일단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 등의 피해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 또 다른 소비자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¹⁾

사업자의 품질보증은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요소가 되고 있으며, 상품의 품질 보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도 중요한 소비자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떤 제품이든 개발·설계·제조·유통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조적인 하자 또는 결함이 발생하게 되므로,²⁾ 사업자는 품질을 보증하여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Consumer Warranty or Guarantee)이란 사업자(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약속 또는 법적 책임으로,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을 하게 되는 책임이다.³⁾

-
- 1) 매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제품의 품질을 둘러싼 불만 및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접수된 건수(총 278,183건)를 신청이유 유형별로 보면 품질에 관한 상담요청이 21.2%(58,991건)에 이르고, 2008년 피해구제건수(총 19,327건)를 신청이유 유형별로 보면 품질에 관한 피해구제요청이 37.7%(7,294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2008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09, 72쪽 이하 참조.
 - 2) 상품에 존재하는 흠은 상품적합성을 결여한 경우와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 분류되는데, 전자가 품질보증이고, 후자가 제조물책임문제이다(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904쪽).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9.2.5, 97다26593, 판례공보 1999상, 434 ; 대판 2000. 7. 28, 98다35525, 판례공보2000하, 1923)
 - 3) 품질보증의 기능은 품질의 확보기능, 품질의 확인기능, 품질의 확약기능으로 나누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보증과 관련한 법률로는 민법을 필두로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종자산업법 등이 있으나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이 분산되어 내용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정책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EU,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보증법제를 정비하여 특별법의 제정, 민법에서의 편입 등을 통해 품질보증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소비자보증법이 있고, EU는 소비자보호 지침으로서 소비자구매지침을 제정하고 품질보증을 규율하고 있고, 회원국은 다양한 입법방식으로 국내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소비자구매에 관한 내용을 민법에 편입하여 품질보증을 규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소비자품질보증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품질보증법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품질보증법제의 개선대안을 제시하므로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권리를 증진하는 등 소비자피해구제업무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⁴⁾

이 연구에서는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다.⁵⁾ 품질보증

데, 이중 소비자정책의 주된 관심영역은 품질확약과 품질확보와 관련한 보증책임이다.

4) 품질보증에 관한 2000년 이전의 국내문헌으로는 Reh binder, Manfred, “독일매매법상 제조자 및 판매자의 품질보증”, 권오승 역, 「경희법학」, 제17권 제1호, 69면 이하; 양명조, “소비자거래에 있어서의 품질보증”, 「사회과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제30집, 1993, 5쪽 이하; 양형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조자의 품질보증”, 「연세법학」 제5권 제1호, 1998, 185쪽 이하; 박인섭·박희주, 『품질보증과 소비자보호』, 연구보고서 92-03, 한국 소비자보호원, 1992; 문용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추급”,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XXII], 박영사, 1999, 261쪽 이하; 김대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리구성”, 「재산법연구」 제10권 제1호, 14쪽 이하 참조.

5)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법제적 측면만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품질보증에 관한 법제적 연구는 민사법적 차원, 사업법 차원, 소비자법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민사법적 차원에서는 품질보증의 민사법적 기준인 하자담보책임 등의 요건 및 효과는 무엇인가 등 민법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가,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법제의 성과를 제시해주고, 현행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을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체계의 대안과 근거를 제시한다.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규범론적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⁶⁾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 비교법적 분석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규범론적 분석과 비교법적 분석에 중점을 둔다.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먼저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품질보증법제의 체계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규범론적 분석은 입법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법론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과거와 현재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수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또한 품질보증증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품질보증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간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도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서술한다.

위와 같은 연구평가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행될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 자리매김에 대해 검토한다. 이에 반해 사업법 차원에서는 사업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관리법, 종자사업법 등에서의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 소비자법차원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경쟁법적 차원의 검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과 관련 고시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권리증진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품질보증의 법제적 논의를 소비자법 차원에서 접근한다. 물론 민사법적·사업법적 내용의 검토도 병행할 것이다.

6) 우리나라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김성천·백병성, 『품질보증의 실태조사 및 법제개선방안 연구』, 2001, 재정경제부 용역과제보고서, 14쪽 이하 참조.

제2장은 품질보증의 법리와 품질보증에 관한 국내법규의 현황을 살펴본다. 우선 품질보증의 개념, 종류, 법적 성질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국내법규를 민사법제, 소비자법제, 사업법제 등의 체계로 나누고, 민사법제는 민법, 상법 등을, 소비자법제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사업법제는 자동차관리법, 종자산업법 등의 법규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 품질보증에 규범론적 분석과 더불어 품질보증에 대한 선진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품질보증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 품질보증법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은 품질보증법제의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품질보증법제의 개선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 보완방안, 품질보증 일반법 제정방안, 민법 편입방안 등을 제시한다.

II. 품질보증법제의 내용과 입법체계

1. 품질보증의 법리

(1) 품질보증의 개념

일반적으로 품질보증이란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약속 또는 법적 책임으로,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의거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을 하게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구입시 교부받은 품질보증서의 내용 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판매점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가 약정품질보증인 품질보증계약에 의한 품질보증이고, 후자가 법정품질보증인 하자담보책임이다.

(2) 품질보증의 종류

가. 약정품질보증⁷⁾

일반적으로 품질보증이란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크고 작은 공산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그 포장 내에 삽입되어 있는 보증서의 표제로 자주 보게 되는 용어이다.

소비자라면 “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는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 지정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과 같이 구입하는 크고 작은 제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삽입되어 있는 ‘품질보증서’ 또는 ‘제품보증서’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품질보증서의 품질보증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제품구입후나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야 품질보증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품질보증서에 의한 약정품질보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약속이고 그 약속의 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1차적으로 품질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약정품질보증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계약규정이 적용된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의 품질보증서는 직접 또는 판매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교부된다. 따라서 제조자는 품질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법정품질보증

비록 소비자는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제품하자에 대해 판매업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

7) 약정품질보증의 경우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제조자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판매업자의 담보책임은 어떻게 되는냐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설, 손해담보계약설, 이행담보계약설 등이 있다.

임은 소비재매매 뿐만 아니라 개인간 매매, 상사매매에도 적용된다(동법 제580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의 하자과 관련한 보상기준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구입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이어야 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데 무과실이이어야 한다.⁸⁾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제품의 하자과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소비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하자가 보수로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소비자가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있다.

다. 양 보증의 관계

약정품질보증과 법정품질보증은 제품하자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 등 책임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은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이므로 품질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진다.

8)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XIV권 채권(7), 박영사, 1997 참조.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약정품질보증은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보증관계에 있다. 품질보증계약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제품이 인도된 후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을 갖추면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품질보증법제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품질보증법제는 민법, 상법 등 민사법제,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법제, 자동차관리법, 종자산업법 등 사업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서 품질보증에 관해 분산되게 규정하고 있는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약정품질보증과 법정품질보증으로 구별하여 보면 약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약법의 일반법리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소비재매매의 약정품질보증과 관련하여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법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소비재매매를 포함한 모든 유상매매에 적용되는 담보책임 특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민사법제

가. 민 법

민법은 품질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동법 제580조), 불완전 이행(민법 제390조), 성질의 착오(민법 제10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매수인의 구제를 도모하는 데 있다. 품질의 적합성을 목표로 한다면 품질보증책임은 완전물급부청구, 보완청구 등 본래의 품질이행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대금감액, 해제 내지 취소 등의 구제가 있어 그 구제의 방향은 반대이다. 이들의 구제방법은 기능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적이고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민법은 종류채권의 목적물품질(민법 제375조), 특정물인도의무자의 선관의무(민법 제374조), 특정물의 현상인도(민법 제462조) 등이 있다. 이들 규정은 계약의 체결이후 품질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품질보증의 형태에 따라 보면 민법은 약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법규정을 적용하고, 법정품질보증책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일정한 지우는 데 이것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 참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품질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인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이다.⁹⁾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흠이 없는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원리로 소비재매매는 물론 개인간의 매매, 상인간의 매매에도 적용된다.

나. 상 법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하자·수량 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지위 즉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으로 소비재매매에 있어서 품질보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소비재매매를 전제로 한 품질보증제도의

9) 2004년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민법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을 수정했다. 첫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안에서 매수인의 권리로 대금감액청구와 하자보수청구를 추가하고, 매수인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을 인정했다. 둘째, 종류물매매에 관한 제581조 개정안은 종류물매매에서도 대금감액과 하자보수청구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873쪽 이하 참조.

개선방안에 중요한 참고규정이 된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대금감액·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다(상법 제69조 제1항 전단).¹⁰⁾ 그러나 검사와 통지는 민법상의 권리행사를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목적물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6월내에 발견하여 통지하면 된다(동법 제69조 1항 후단).

(2) 소비자법제

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품질보증기간 표시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표시사항중 하나가 품질보증기간이다(동법 동조 제4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책임의 내용,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¹¹⁾은 품목별 품질보증책임의

10)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한 것이다(대판 1987.7.21, 86다카2446).

1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내용과 품질보증기간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서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한 유형으로 무효가 되는 면책조항의 하나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동법 제7조 제3항). 즉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을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은 소비자거래에서 문제되는 면책조항 중 하나로 하자담보책임을 발생을 아예 배제하거나 또는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은 개별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약정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대량계약에서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중 한 두 조항으로서 행해진다. 후자의 경우를 특히 품질보증책임면책약관 또는 면책조항이라고 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 이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로 심결한 약관조항으로는 자동차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조항(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88-4호), 상가분양계약에서 담보책임면제조항(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3-168호), 가맹계약서상 반품제한조항(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9-71호), 돼지고기 품질개선 생돈생산공급계약서상 담보책임조항(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약)제99-13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이 있다.¹²⁾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표시·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조 제1항). 구체적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중에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 6.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에 의하면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와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를 들면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 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년간 보증”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당해 기간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 또는 A/S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구제 곤란 등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12) 품질보증 약관조항과 관련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은영, 『약관 규제법』, 박영사, 199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는 품목별로 품질보증책임,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기 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 특수판매자가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이나 교부계약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³⁾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통신업자가 계약체결전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나 교부계약서에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3) 사업법제

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판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로서 무상수리 등 품질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자동차제작자들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의 하나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

13)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는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에도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다단계판매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16조).

14)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제6호).

疵)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요건은 구체적으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이내 이고 주행거리는 6만킬로 미터이내 일 것, 그 외의 장치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는 4만킬로 미터 이내 일 것이다(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1항).

둘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을 규정하고(동법 제58조 제3항 제5호), 사후관리사항중에 무상 점검·정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제134조 제1항 제2호).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 일부터 90일이내
-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 일부터 60일이내
-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 일부터 30일이내

나.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은 종자보증의 종류, 보증표시, 보증서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국가보증)과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보증(자체보증)으로 구분한다(동법 제124조 제1항). 국가보증의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와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품종목록등 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고(동법 제125조 제1항), 자체보증의 대상은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와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동법 제126조).

둘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31조 제1항). 보증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관련 별표2에 규정되어 있고, 보증의 유효기간은 채소 2년, 벼 1개월, 감자·고구마 2개월, 기타 1년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06조).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33조).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품질보증서의 교부의무, 품질보증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로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와 일정한 사항¹⁵⁾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15)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제작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함, “배출가스”라 함)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동법 제46조).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동시행규칙 제63조 관련 별표 18).

마.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은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은 10년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이내

주소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

3. 품질보증법제의 입법체계

품질보증은 품질을 매개로 한 제조자, 판매업자, 소비자 등 다수당사자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관계로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영역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중 품질보증에 적용되는 법률들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사법제, 소비자법제, 산업법제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현행 품질보증법제의 입법체계상의 특징은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품질보증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개별입법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표1> 품질보증에 관한 국내법제의 현황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민사법제	민법	○ 하자담보책임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책임
	상법	○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소비자법제	소비자기본법	○ 품질보증기간 표시의무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하자담보책임 배제·제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보증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 중요정보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과 계약서교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체결전 표시·광고, 고지와 계약서교부
산업법제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무상수리 ○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중자산업법	○ 보증의 구분(국가보증과 자체보증) ○ 보증표시 ○ 보증서발급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품질보증서교부 ○ 품질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가스 보증기간
	인삼산업법	○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에 관한 개별입법주의는 품질보증에 관한 수범자(기업과 소비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품질보증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품질보증법제의 준수나 절차 등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법제의 입법체계는 점증하고 있는 소비재의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개별법령에서 품질보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품질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품질보증을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으로 구분하여 규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규율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약정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품질보증서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Ⅲ.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법평가의 방법은 규범론적 분석과 비교법적 분석이다. 우선 대상법령인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으로서의 법령간의 체계적합성 분석을 행하고, 미국, EU,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품질보증법제의 동향을 파악한다.

1. 체계적합성 분석

(1) 체계적합성 분석의 의의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품질보증법제간의 체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규범론적 평가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품질보증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 사이의 체계성을 밝히고 이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이다. 특히 품질보증에 관한 특별법의 난립은 규제의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품질보증법제에 대하여 그 체계적합성의 검토는 규제와 행정목적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법령의 체계적합성이란 법령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다. 이는 법령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적합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적합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합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계적합성의 원칙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법령내의 체계적합성 내지 법령간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체계내적 적합성

가. 규정형태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서 명령에 수권하거나 정부에 수권할 때 그 법률의 수권규정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들이다.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복잡다기하고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대한 행정의 탄력적이

고 신축적인 적응성의 부여라는 또 다른 공익적 용구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하를 어디서 찾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이른바 규율 밀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나.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은 법의 형식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명확성은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필수적인 보완이자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이 규율하는 내용의 의미가 광범하고 막연하여 법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품질보증법제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품질보증서 발급단계에서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품질보증서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 보상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품질보증서의 표시에 대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만 품질보증서에 표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모든 소비자계약에 적용할 법적 근거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서 품질보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다. 포괄적 위임의 금지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헌법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의 금지는 위임입법의 영역에서 하위법규범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에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범류에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칙은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품질보증법제에서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은 법정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이다. 품질보증법제에서 법정품질보증은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 품질보증법제에서는 법정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종자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인삼산업법 등에서는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라. 중요사항 유보

법률유보에 대한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에만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작용이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요구도 높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급부행정과 같은 부문에서도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명령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품질보증법제에서 중요사항 유보의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은 약정품질보증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품질보증법제에서 약정품질보증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품질보증법제에서는 약정품질보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바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재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국가의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표시기준 제정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제10조 제4호),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보호시책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품질보증에 있어서 소비자권리의 실현이 어렵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의 내용,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고하는 고시(告示)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다시 말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보증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사업자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의 형식과 내용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약정품질보증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3) 체계외적 적합성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

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법제중 소비자기본법에서 그 법령과 다른 법령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품질보증규정은 품질보증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런 규정과 같이 수평적 체계적합성을 갖추려는 의미로는 실제 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이에 관련 법령간의 수직적 체계적합성을 갖추도록 자동차관리법, 종자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인삼산업법 등 다른 품질보증법제와의 관계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비교법적 분석

품질보증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국제적 소비자입법정책의 과제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품질보증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¹⁶⁾ 품질보증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품질

16) 품질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는 유엔통일매매협약이 있다. 동협약 제35조와 제36조는 물품의 품질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37조 내지 제40조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물품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동협약 제37조)와 물품을 검사하고 나아가 매도인에게 그 불일치를 통지해야 한다는 매수인의 의무(제38조-제40조)이다. 동협약 제35조는 물품에 관한 매도인의 계약상의 의무를 통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동협약 제36조는 운송중에 손상으로 인하여 물품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도착했을 때,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다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39조는 불일치의 통지시기와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40조와 제44조는 제39조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존호놀드, 『UN통일매매법』, 오원석 역, 삼성사, 1998, 265쪽 이하 ; 페터슈레히트림, 『유엔통일매매법』, 김민중 역, 두성사,

보증을 수용하는 입법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소비자법전 편입방식, 민법 편입방식, 특별법 제정방식 등이 있다. 소비자법 편입방식은 소비재품질보증의 내용을 다른 분야의 소비자거래를 포괄하고 있는 소비자법전에 편입하는 규율하는 입법방식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민법편입방식은 개인간 매매에서의 품질보증은 물론 소비재매매의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민법전에 편입하여 규율하는 입법방식으로 독일이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 제정방식은 소비재매매분야만의 품질보증을 별도로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는 입법방식으로 미국, EU지침,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다.¹⁷⁾

이하에서는 미국, EU,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통해 품질보증법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품질보증정책의 방향과 법제정비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 국

미국의 품질보증법제는 연방법차원에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연방소비재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 Federal Consumer Warranty Act),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칙¹⁸⁾ 등이 있고, 주법차원에서는 신차, 중고차 등

1995, 104쪽 이하; 김동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하자담보책임”, 「상사법연구」 제7집, 236쪽 이하 참조.

17) 김성천, “품질보증의 비교법적 고찰”, 「외법논집」 제11집, 2001, 265쪽 이하.

18) FTC 규칙들은 서면 소비자제품 보증조건의 공시에 관한 규칙(the FTC's Rule on Disclosure of Written Consumer Product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은 15달러 이상의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보증범위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포함된 문서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문서보증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항목은 모든 보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항목(기본적인 항목은 보증의 범위, 보증기간, 보상의 방법, 보증서비스, 고객의 법적 권리 등)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항목(고객의 의무사항, 우연적인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제한 및 면책사항, 분쟁해결규칙에 의한 분쟁해결 및 이를 위한 인적사항과 청구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 매매전 이용 서면보증조건에 대한 규칙(The FTC's Rule on Pre-Sale Availability Written Warranty Terms)과 광고보증에 대한 지침(the FTC's Guides for the Advertising of Warranties and Guarantee)이 있다.

에만 적용되는 레몬법¹⁹⁾이 있다.²⁰⁾

가. 통일상법전

미국의 통일상법전은 제2편 매매(Sales)에서 보증(Warranty)에 관하여 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2-313조의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제2-314조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제315조의 특정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그리고 제2-312의 권원의 보증(Warranty of title)과 권리책임에 대한 보증(warranty against infringement)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중 앞의 명시적 보증과 묵시적 보증이 품질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비자보호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통일상법전에 있어서 매도인의 보증은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목적물의 품질에 관한 계약조건이다. 이는 그의 특정한 행위나 표시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부과되기도 한다. 즉 통일상법전은 보증이 성립하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한 진술이나 표시로부터 생기는 것이 명시적 보증이고, 계약당사자의 기대에 따라 법이 부과하는 것이 묵시적 보증이다.

나. 연방소비재보증법

연방 소비재보증법은 첫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보증적용범위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둘째, 소비자가 가격, 외형, 보증적용 범

19) 본래 레몬법은 신차의 구입에 대한 것이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 애완견의 구입의 경우에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각주는 위와 같은 연방법에 추가하여 품목별로 별도의 소비제품품질보증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일명 레몬법이라고 한다. Lemon이란 불량품을 의미한다. 레몬법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50개주)가 채택하고 있는 품질보증관련 소비자법으로 신차구입자를 위한 보증법이다. 결합자동차매수인보호법이라고도 한다. 1982년 Connecticut주(1984년 개정)가 처음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각주는 이를 모방하여 레몬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각주의 레몬법은 기본적 구조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고자동차와 품질보증”, 『외법논집』 제13집, 2002, 335쪽 이하 참조.

20) 미국의 품질보증법제에 대해서는 Sheldon, J & Carolyn L. Carter, Consumer Warranty Law, Natioanl Consumer Law Center, 2001 ; Pridgen, 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Law, Clark Boardman Co., Ltd., 1988 ; 양명조, 『미국계약법』, 법문사, 1996 참조.

위 등의 조건을 구매코자 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요구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증적용제공범위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보증범위를 확대 유도하여, 넷째, 기업이 그들의 보증의무를 시기적절하고 철저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센티브의 강화, 분쟁해결의 신속화 및 비용의 최소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1975년 제정된 연방법이다.²¹⁾

이 법의 적용범위는 첫째, 1975년 7월 4일 이후에 제조된 소비재로 이에 관한 보증서가 발행된 경우이다. 즉 소비재에 대한 문서보증에 적용되며 구두보증은 적용되지 않다. 이 법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서의 발행자체를 의무화하지 않으나, 일단 사업자가 소비재에 대하여 서면보증을 제공하면, 이 법에 따라야만 한다. 여기서 소비재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그리고 보통 개인, 가족 또는 가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유형동산을 말한다(제2301조(1)). 제품의 가격 여하는 적용의 유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가격이 15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완전보증이든 한정보증이든 한가지를 지정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제2303조(a)(d)), 가격이 15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보증의 개시요건 1976년 12월 31일 발효)에 따라 소정의 항목에 관하여 보증서에 의한 세부적인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법의 적용제외범위는 구두보증, 서비스에 대한 보증, 재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보증, 상거래에 있어서 판매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서면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 소비재에 대한 보증, 제품이 상거래에 있어서 판매되고, 시장에 소개 혹은 출하 또는 출하후 판매제공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증자의 의무사항은 법정사항은 첫째, 보증이 완전(full)보증인지, 제한(Limited)보증인지를 지정해야 한다.

보증자의 금지사항은 첫째, 묵시적 보증의 포기 또는 변경의 금지(Disclaimer or Modification of Implied Warranties)로서 이 법이 소비자제품의 문서보증을

21) 미국 연방소비재보증법에 대해서는 Sheldon, J & Carolyn L. Carter, Consumer Warranty Law,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2001 ; 손영화·손수진, “품질보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품질보증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0집, 2007 참조.

적용대상으로 하더라도 소비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문서의 보증의 2년이면 묵시적 보증도 2년으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 끼워 팔기(Tie-in sale) 보증조항은 금지된다.

셋째, 기만적 보증(Deceptive Warranty)은 금지된다.

이 법이 소비자의 보증분쟁에 미치는 효과는 첫째, 소비자가 보증문제를 법원에서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 둘째, 사업자가 법적 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값싸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 알려진 비공식 절차의 선택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증분쟁을 해결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소비자의 법원소송은 이 법에 의할 때 소비자의 법정비용과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의 소송이 아닌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의한 분쟁해결은 미국의 사업개선소(Better Business Bureau)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 조정, 중재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규칙(Dispute Resolution Rule)에 의한다.

(2) 유럽연합(EU)

EU는 1999년 7월 7일 소비재매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을 공포하여,²²⁾ 회원국은 이를 2002년 1월까지 국내법화하도록 했다.²³⁾

이 지침은 소비재와 관련한 법정보증과 임의보증에 관한 소비자권리를 규정

22) 유럽연합의 소비재매매지침에 대해서는 박영복,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외법논집」 제16집, 2004 ; Schulte-Nölke, H., Twigg-Flesner, C., & Ebers, M., EC Consumer Law Compendium, Sellier, 2008 ; Twigg-Flesner, Christian, Consumer Product Guarantees, Ashgate, 2003 참조.

23) 소비재매매지침의 회원국 국내법화 현황에 대해서는 박영복, “EU회원국의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의 수용”, 「법제」 2006년 5월호, 71쪽 이하 참조.

하고 있다. 즉 전반은 소비자가 하자있는 소비재를 구입한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는 법정보증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후반은 판매자나 제조자가 보증서에 의해 임의 일정기간, 제품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인 임의보증에 관해 명백성에 관한 원칙,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및 보증에 관한 법적 틀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보증의 종류를 법정보증과 약정보증을 나누고 있다.

법정보증(legal guarantee)은 구입제품의 하자에 관한 구입자의 모든 법적 보호를 포함, 판매계약의 부대효과로서 법률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보증은 판매계약에서의 구입자의 신뢰, 즉 구입제품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을 예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그 효과는 법에 구속된다. 이에 반해 약정보증, 소위 상업적 보증(commercial gurantee)은 보증인(판매자 또는 제조자)이 판매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임의로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보증은 제품에 부수적으로 또는 구입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하자가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보증인은 수리 또는 교환을 약속하는 것이다.

법정보증의 경우 제품인도시 존재하며 인도 후 2년 이내에 나타난 하자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을 진다. 단, 매매계약체결시 소비자가 당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 소비자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제품 수리 및 무상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무상이라 함은 운송료, 노동비용, 부품 및 재료비 등 발생한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당해 권리행사를 위해 지불한 소송비, 우편료 등도 포함된다. 수리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판매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해 당해 제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진다.

소비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하자 발견 후 2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시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판매자만이 최종소비자에 대해 법정보증에 관

한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법정보증 즉 하자담보책임청구기간이 통일되었다는 점이 이 지침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소비재매매에 있어서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중고품의 경우에도 2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나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정보증의 경우 보증에 의해 국내법에 기초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해야 하고, 보증내용, 보증에 기초한 청구에 필요한 절차사항 특히 보증기간, 보증의 지리적 적용범위, 보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소비자의 요청이 있다면 당해 보증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광고가 실질적인 보증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광고표현도 임의로 부가되는 보증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독일

독일은 2002년 채권법개정시 유럽연합의 소비재매매지침을 민법전에 편입했다.²⁴⁾ 독일민법은 제433조 이하의 매매에 관한 규정에 소비자자와 사업자 사이의 소비재매매를 규율하는 특별규정(동법 제474조 이하)을 두고,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강행규정, 송부매매에서의 위험이전, 입증책임의 전환, 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민법에서 소비재매매란 동법 제13조²⁵⁾와 제14조²⁶⁾에 규정된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매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에는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4) 독일민법상 소비재매매에 대해서는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김형배 외 5인 공저,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김종현, “독일개정채권법상의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칙”, 『법학연구』 제18집, 2005 참조.

25) 독일 민법 제13조는 소비자를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인 직업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6) 독일민법 제14조는 사업자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인 직업 활동과 관계된 행위를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별규정은 동산(물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474조 제1항). 중고품도 소비재매매의 대상에 포함되나 그 매매가 공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한된다(동법 제474조 제2항).

독일민법상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징적인 규정으로는 유럽 소비재매매지침 제7조 제1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제475조가 있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제433조~제435조), 하자과 하자청구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면제(동민법 제442조), 그리고 보장에 관한 규정을 소비재매매계약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하여 위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사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비재매매에서는 독일민법 제475조 제1항과 관련된 담보책임에 관한 면책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정에는 독일민법 제475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동조 제3항). 이외에도 하자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 미만(중고품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동법 제475조 제2항).

독일민법은 과거 미전형계약이었던 이른바 보증계약(Garantievertrag)을 제443조에 명문화하여 매도인이 물건의 성상이나 그의 내구성을 매수인에게 보장한 경우 그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법상의) 권리와는 별도로 보증에 기한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매수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보증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진다.

독일민법 제477조는 소비재매매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추가적으로 보증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보증의 의사표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에는 보증에 의하여 소비자가 담보책임법상의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다는 것과 보증의 내용 및 보증을 유효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 특히 보증기간과 보증지역, 보증자의 이름과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동법 제477조 제3항은 위에 열거하고 있는 요건(동조 제1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의무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84년 소비자품질보증법(Consumer Guarantees Act)을 제정하고 1990년 개정하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총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

이 법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과 관련한 법정보증 및 약정보증은 물론 이런 보증을 위반한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증이란 물품의 경우 권원(title), 허용된 품질(acceptable quality), 특정목적의 적합성(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설명서 또는 샘플에 대한 대응, 가격, 수리와 부품 등에 관한 것이고, 용역의 경우는 합리적인 배려와 기량, 특정목적의 적합성, 완료시기, 가격 등에 대한 것임. 이것은 법정보증 또는 묵시적 보증에 해당한다.

이 법은 제조자의 명시적 보증(Express guarantees)에 대해서도 법정보증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보증위반에 따른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는 물품을 수리하거나 권원의 하자를 치유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반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물품을 거부(reject)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증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 구제권리가

27) 뉴질랜드의 소비자보증법에 대해서는 Skinnon, John, “Consumer Guarantees Act”, Skinnon, J & John McDermott eds., The Law of Marketing in New Zealand, The Open Polytechnic of New Zealand, 1997, 99쪽 이하; Todd, Consumer Law Reform in New Zealand :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1994] Consumer Law Journal 100 ; 소비자보증법 전문은 <<http://rangi.knowledge-basket.co.nz/gpacts/public/text/1993/an/091.html>> 참조.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일정한 경우 제조자는 물론 용역의 공급자에게도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소비자는 일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ancel contract)가 있다.

(5) 캐나다

캐나다는 주법으로 소비제품질보증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1978년 제정된 캐나다 뉴브룬스윅의 소비재보증 및 책임법(New Brunswick's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은 총 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²⁸⁾

이 법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소비자제품과 관련한 공급자의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 및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와 그와 관련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 보증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문서 또는 공적 언술(광고)로 보증을 한 경우 구매자가 신뢰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보증의 내용은 권원, 신제품(Unused), 품질과 적합성, 지속성 등에 대한 것이다.

이런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는 위반을 시정할 권리,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거절권, 유치권 등이 있고, 한편으로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음. 그리고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소비자라도 보증위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계약당시 예견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강행법규이다.

한편 이 법은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6) 우리법에의 시사점

미국, EU,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표 2>에서 보듯이 소비재 분야의 품질보증에 관해 민법, 소비법전, 특별법 등의 입법형식으로 규

28) 캐나다 뉴브룬스 주의 소비재보증 및 책임법의 전문 및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unb.ca/web/law/cpwala/CPWALA.htm>> 참조.

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연방소비재보장법, EU의 소비재매매지침, 독일 민법전, 프랑스의 소비법전, 뉴질랜드의 소비자품질보증법, 캐나다의 소비재보장 및 책임법 등은 품질보증의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권리에 초점을 두고 제정·운영되고 있다.

〈표 2〉 품질보증에 관한 비교법적 현황

국가 및 관련 법제			주요 내용
미국	연방법	통일상법전(UCC)	○ 묵시적 보증과 명시적 보증 ○ 보증위반의 효과
		소비재보증법	○ 의무사항 ○ 금지사항 ○ 분쟁해결절차
	주법	레몬법	○ 자동차, 중고자동차, 에어컨 등
유럽연합	소비재매매지침		○ 하자의 개념 ○ 소비자권리 ○ 권리행사기간 ○ 보증
	독일		○ 민법전에 소비재매매 지침 편입
기타	뉴질랜드		○ 소비자품질보증법
	캐나다		○ 소비재보증 및 책임법

이에 우리나라도 소비자와 사업자를 품질보증의 주체로 하고 소비재매매에서 품질보증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품질보증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품질보증법제를 정비한다면 해결해야 할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입법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품질보증을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으로 구분할 것인가, 구분하는 경우 각각에 관해 규율해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약정품질보증의 경우 보증서에 표시해야 할 내용과 금지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IV. 대안과 권고

1. 대안제시

(1) 대안 1 : 소비자기본법 보완방안

첫번째 대안은 소비재품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품질보증에 관한 원칙은 물론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약정품질보증과 법정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현행 품질보증법제는 소비자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품질보증법제가 모든 품목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 신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품질보증의 적용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약정품질보증을 이행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법정품질보증을 강제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든 적용법규의 내용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든 품질보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품질보증에 관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입법방식은 소비재에 관해서는 모든 품목을 포괄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약정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통일적으로 약정품질보증을 이행할 것이고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혼잡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현재 소비재에 관한 품목을 포괄하는 외국의 입법례로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과 유사한 것은 프랑스의 소비법전이다.

(2) 대안 2 : 품질보증 일반법 제정방안

두번째 대안은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품질보증법제는 일반 소비재는 물론 자동차, 종자, 인삼 등 일부 품목을 품질보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규제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품

질보증을 둘러싼 피해자인 소비자나 품질보증이행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에 따라 품질보증의 내용,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서 등이 달라 실효성 있는 품질보증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품질보증을 수범자인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한다면 실효성 있는 품질보증을 유도할 수 있다.

품질보증 일반법의 입법방식은 미국의 소비재보증법, EU의 소비재매매지침, 뉴질랜드의 소비자품질보증법, 캐나다의 소비재보증 및 제조물책임법 등 선진국의 법률을 참조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보증자와 소비자의 의무 및 책임 등 실체적 사항, 분쟁해결절차 등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사항까지 자세하게 규율한다. (가칭) 소비재품질보증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소비재보증법, EU소비재매매지침, 뉴질랜드의 소비자품질보증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생활과 관련한 물품과 용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집행주체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일반법 형식을 통해 약정품질보증과 법정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품질보증 일반법의 입법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수범자의 관점에서 품질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품질보증규제권한을 갖도록 할 것인지 기존의 소관행정부처가 소관품목에 대해 품질보증규제권한을 갖도록 할 것인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3) 대안 3 : 민법 편입 방안

세번째 대안은 품질보증의 민사법적 성질을 반영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을 민법에 편입하여 민법에서 소비재품질보증을 규율하는 방안이다. 참고가 되는 입법례는 독일 민법전으로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은 특별한 종류의 매매의 일종으로 소비재매매를 제474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

서도 특수매매의 일종을 소비재매매를 규정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 실효성 있는 품질보증의 적정화를 촉진할 수 있다.

민법 편입대안을 채택할 경우 소비재보증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품질보증에 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대안 비교와 권고

입법대안의 평가기준은 다양한 관점에 접근되고 있지만, 품질보증법제의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효율성, 비용, 적용적합성, 친숙성 등의 기준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²⁹⁾ 여기서 효율성은 품질보증에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비용은 품질보증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입법적 수요를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적용적합성은 품질보증법제의 집행기구의 관할이 얼마나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친숙성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품질보증법제에 대한 인식이나 적용될 범조항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각각 초점을 둔다.

대안의 공통적 전제는 현행 품질보증법제가 개별법령에 따라 품질보증요건, 품질보증서의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약정품질보증과 법정품질보증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업은 물론 소비자 더 나아가 규제주체에게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위의 3가지 대안은 이런 품질보증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3가지 대안은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안1(소비자기본법 보완방안)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보완될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이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한 경우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29) 입법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참조.

있다(효율성).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성격상 품질보증의 민사법적 내용을 자리매김하고 민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입법비용이 크다(비용). 단일의 품질보증집행기구를 둘 경우 품질보증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증대하나, 개별집행기구를 인정할 경우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어렵다(적용적합성). 소비자기본법 이외에 기존의 개별법이 존재할 경우 수범자로서는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기본법에 인식도나 적용조항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게 된다(친숙성).

대안2(품질보증 일반법 제정방안)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적용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효율성). 한번의 입법으로 중복되는 법제를 모두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고,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률의 제·개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으나,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동일하게 일반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정비용이 크다(비용). 모든 품질보증을 통할하는 하나의 집행기구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용이하나, 규제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적용적합성). 수범자의 입장에서 품질보증 일반법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용될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친숙성).

대안3(민법 편입 방안)은 민법에 소비재에 관한 품질보증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품질보증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므로 적용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효율성). 민법 개정의 비용은 크나, 한번의 입법으로 중복되는 법제를 모두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고, 일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법률의 제·개정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다(비용). 품질보증을 통할하는 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통일적 집행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적용적합성).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등을

통해 품질보증문제를 접근해야 하므로 인식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용될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나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다(친숙성).

대안으로 제시한 입법체계적 특성을 법적 보호의 공백(효율성), 법제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비용), 법집행과정의 용이성(적용적합성), 수험자의 이행가능성(친숙성) 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분석을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품질보증법제 개선대안 비교

구 분	효율성	비 용	적용적합성	친숙성
	법적의 공백 해소	법제정비 소요비용	집행기구의 관할적합성	수법자의 이행가능성
소비자기본법 보완 방안	○	△	△	△
품질보증 일반법 제정방안	○	△	○	◎
민법 편입 방안	◎	△	×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위의 3가지 대안중 현실적으로 품질보증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대안 2(품질보증 일반법 제정방안)이다. 대안 2는 소비자거래의 적정화라는 관점에서 선진국이 선호하는 입법방식이다. 소비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EU,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을 일부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선 소비자와 사업자를 품질보증의 주체로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품질보증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본래적 소비자법인(가칭)소비재품질보증법의 제정이 가장 적절한 입법대안이다.

비교법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소비재보증법, EU의 소비재매매지침, 뉴질랜드의 소비자품질보증법, 캐나다의 소비재보증 및 제조물책임법 등은 품질보증의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를 초점으로 하는 소비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재품질보증법을 제정한다면 이 법의 목적은 품질보증의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보증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있어야 한다. 이 때 소비재품질보증법의 입법형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의 연방소비재보증법과 같이 약정품질보증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방안이다. 통일상법전(UCC)과 같이 민법에 약정품질보증과 법정품질보증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소비재품질보증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소비자기본법 등 다른 품질보증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약정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을 참조로 약정품질보증서의 교부의무, 보증서의 법정기재사항 등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기타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둘째,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같이 법정품질보증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정품질보증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약정품질보증에 관해서는 근거조항만을 두고 이에 대해서는 약관규제차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을 동시에 규정하면서 법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의 내용, 품질보증기간, 보증책임의 내용을 법정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정품질보증의 경우 보증서에 표시해야 할 내용과 금지해야 할 보증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어떤 입법형식과 내용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 등 기존의 법률상 품질보증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XIV권 채권(7), 박영사, 1997.
- 김대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하자담보책임의 범리구성”, 『재산법연구』 제10권 제1호.
- 김동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하자담보책임”, 『상사법연구』 제7집.
- 김성천, “품질보증의 비교법적 고찰”, 『외법논집』 제11집, 2001.
- _____, “중고자동차와 품질보증”, 『외법논집』 제13집, 2002.
- _____, “품질보증의 법제개선방안”, 『법제』 2002년 9월호.
- 김성천·백병성, 『품질보증의 실태조사 및 법제개선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과제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 김종현, “독일개정채권법상의 소비재매매에 관한 특칙”, 『법학연구』 제18집, 2005.
- 김형배 외 5인 공저,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 문용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추급”,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XXI], 박영사, 1999.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영복,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외법논집』 제16집, 2004.
- _____, “EU회원국의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의 수용”, 『법제』 2006년 5월호.
- 박인섭·박희주, 『품질보증과 소비자보호』, 연구보고서 92-03,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 손영화·손수진, “품질보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품질보증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0집, 2007.
-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양명조, “미국통일상법전과 매도인의 워런티책임”, 「사법연구」 제2권, 1985.
- _____, “소비자거래에 있어서의 품질보증”, 「사회과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제30집, 1993.
- _____, 『미국계약법』, 법문사, 1996.
- 양현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조자의 품질보증”, 「연세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8.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_____, 『채권각론』제3판, 박영사, 1999.
- 존호놀드, 『UN통일매매법』, 오원석역, 삼영사, 1998.
- 페터슈레히트립, 『유엔통일매매법』, 김민중 역, 두성사, 1995.
- 한국소비자원, 『2008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09.

Pridgen, 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Law, Clark Boardman Co., Ltd., 1988.

Schulte-Nölke, H., Twigg-Flesner, C., & Ebers, M., EC Consumer Law Compendium, Sellier, 2008.

Sheldon, J & Carolyn L. Carter, Consumer Warranty Law, Natioanl Consumer Law Center, 2001.

Skinnon, John, “Consumer Guarantees Act”, Skinnon, J & John McDermott eds., The Law of Marketing in New Zealand, The Open Polytechnic of New Zealand, 1997.

Twigg-Flesner, Christian, Consumer Product Guarantees, Ashgate, 2003.

Todd, Consumer Law Reform in New Zealand :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1994] Consumer Law Journal 100.

〈Abstract〉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Warranty Laws in Korea

Kim, Sung-Cheon

(Research Fellow, Korea Consumer Agency)

This article studies the problems and legislation improvement of Warranty Laws. In consumer transactions, a warranty is a collateral assurance or guarantee that certain facets of an article or service sold is as factually stated or legally implied by the seller, and that often provides for a specific remedy such as repair or replacement in the event the article or service fails to meet the warranty.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s shared by all members and organizations of society, with informed consumers, government, corporations playing particularly important roles. Governments should promote warranty through laws. This article derives from the recognition warranty laws are so complicated that the customers (corporations and consumers) go through inconveniences. The typical Laws on warranty are FRAMEWORK ACT ON CONSUMERS, Civil Ac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AUTOMOBILE MANAGEMENT ACT, SEED INDUSTRY ACT, and so on. Generally,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vided into prospective,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in terms of stage of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warranty laws is a retrospective evaluation. A retrospective evaluation is to judge whether the objects of laws intended are accomplished, whether the customers of laws admit and tolerate raised burden, and whether the customers of laws observe the regulations enough.

This article, in terms of retrospective evaluation, intended to present a suitable alternative for the present with the normative analysis,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on the warranty laws. That is, this article intends to verify the justification of warranty laws with the investigation of some issues : whether warranty laws as a norm for recall systems keep their objects at the present,

and so forth. Verifying the effect of the present laws, and the clarifying the grounds for going on with the present laws or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s laws, I intend to present enough backgrounds so that they may assist what is called a legislator to truly discharge the duty of improvement in laws.

As a normative analysis, first, I research into the laws' history and systemic validity among laws. Second, I analyze the tendency of comparative laws on warranty in U.S., EU, Germay, Newzealand, Canada, and so on.

Finally, The object of this article proposes alternatives about the improvement legislation of Warranty Laws with performing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in warranty laws. I hope that these alternatives will be utilized as the useful legislative materials to enacting good warranty laws in the future.

※ **Keywords** : Warranty, Warranty Laws, Framework Act on Consumers, Civil Act, Consumer Product Warranty Act, Consumer Right.